

※ 유 의 사 항

- 1.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(변경처리 불가,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거짓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※ 작 성 요 령

- 1. “인적사항”칸에는 변경등록 신청자의 현재 인적사항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2. “성명”칸에는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3. “말소된 주민등록번호”칸에는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,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적어야 합니다.
- 4. “부모의 성명”칸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·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(본적지)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“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”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- 5. “국내 최종주소”칸에는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은 “대한민국 최종주소지”를 적고,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“등록기준지(본적지)”를 적어야 합니다.
- 6. “국외거소”칸에는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(현지어 함께 기재 가능)로 적어야 하며, 국외거소의 ()안에는 전자우편 주소와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·사무실 등의 전화번호(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)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 - ☞ 국외거소,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는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송부,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통지, 이의신청 결과 안내, 투표기간·장소·지참물 등 선거관련 각종 정보·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7. “변경항목”칸에는 성명, 여권번호, 말소된 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·성별), 국내 최종주소지(등록기준지), 국외거소(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) 등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.
- 8. 끝부분의 “신청인”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